

『인사규정』 일부 개정(안)

2020. 4. 16.

문서번호	인재경영팀-9363	선임	인재경영팀장	본부장	본부장	대표이사	
결재일자	2020.04.16.	정승연	04/16 이재만	04/16 신윤재	04/16 안재선	전결04/16 최경란	전결04/16 최경란
공개여부	공개	협 조		주임			
방침번호	대표이사방침 제 (848)호		04/16 장지윤				

추진근거	- 서울시 조사결과 행정상 조치요구(감사실-385, 2020.3.27.)		
대 내 외 협력현황	부서(단체)명	협의내용	협의결과
사 업 비			

서울디자인재단 (인재경영팀)

사전 검토항목

※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✓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 토 항 목	검토여부 '✓' 표시			
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	시 민 :	유 <input type="checkbox"/>	()	무 ✓
	이 해 당 사 자 :	유 <input type="checkbox"/>	()	무 ✓
	전 문 가 :	유 <input type="checkbox"/>	()	무 ✓
	옴 브 즈 만 :	유 <input type="checkbox"/>	()	무 ✓
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	법 령 규 정 :	교통 <input type="checkbox"/>	환경 <input type="checkbox"/>	재해 <input type="checkbox"/>
		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	무 ✓	
		고용효과 <input type="checkbox"/>	노동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	균형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
	기 타 :	취약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	성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	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
	디자인 <input type="checkbox"/>	갈등발생 가능성 <input type="checkbox"/>	유지관리 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	무 ✓
타 자 원 의 활 용	중 앙 부 처 :	유 <input type="checkbox"/>	()	무 ✓
	민 간 단 체 :	유 <input type="checkbox"/>	()	무 ✓
	기 업 :	유 <input type="checkbox"/>	()	무 ✓
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	관 계 기 관 :	유 <input type="checkbox"/>	()	무 ✓
	관 련 단 체 :	유 <input type="checkbox"/>	()	무 ✓

『인사규정』 일부 개정(안)

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행정상 조치요구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

1. 추진근거

- 서울시 조사결과 행정상 조치요구(감사실-385, 2020.3.27.)

2. 제안이유

- 서울시 감사위원회 개선요구 통보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
- 인사위원회 위원의 심의의결시 이해관계자 제척, 회피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골자

- 인사위원회 위원 제척·회피·기피 규정 정비(제44조 4항, 5항)
 -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명확화 및 회피 규정 신설

〈서울시 행정상 조치요구 사항〉

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-----(생략)-----
서울디자인재단 「인사규정」 제44조를 개정(제척, 기피, 회피 규정 보완)하시기 바랍니다.

- 오타 수정(제44조 4항)

3. 참고사항

-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절 차: 대표이사 결재 ⇨ 이사회 승인
- 시 행 일: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시행

- 별지 1. 인사규정 일부 개정안 1부
2. 인사규정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
- 붙임 1. 인사규정 일부 개정 전문 1부. 끝.

【별지】

인사규정 일부 개정(안)

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44조 제4항 중 '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.'를 '해당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'로, '사유가 사유가'를 '사유가'로 한다.
- 제44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⑤ 인사위원회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제척사유,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XX월 XX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】

신.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제44조(인사위원회 운영)</p> <p>①~③ (생략)</p> <p>④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<u>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.</u> 또한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 등 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속 상급자, 그 밖에 그 징계 등 사유와 관계있는 사람은 해당 징계 등 사건의 심의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며 징계 등 혐의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<u>사유가</u>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.</p> <p><신설></p>	<p>제44조(인사위원회 운영)</p> <p>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<u>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.</u>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유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⑤ <u>인사위원회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제척사유,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.</u></p>
<p>⑤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</p>	<p>⑥ ----- -----.</p>